

『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외화송금서비스』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0년 5월 21일

2. 개정내용 : 송금문구 변경 및 송금 한도 변경 , 면책조항 문구 수정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3 조 이용대상거래 및 송금 한도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 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</p> <p>① 서비스 이용대상 거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해외체재자(유학생 포함)의 해외여행경비 송금</u> 2. <u>중여성 송금</u> 3. <u>국내이체 송금 등</u> 4. <u>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급여 송금</u> <p>② 송금한도 (자동화기기 이체한도의 적용을 받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해외체재자(유학생 포함)의 해외여행경비: 연간 송금한도 제한없음</u> 2. <u>중여성 송금: 1일 누적 미화 1만불 이내 연간 송금한도 제한없음</u> 3. <u>국내이체 송금: 1회 송금한도 및 연간 송금한도 제한 없음</u> 4. <u>외국인근로자 급여송금: 국내 보수입을 입증하는 금액 범위내, 1회 미화 1만불 이내</u> <p>제 6 조 (서비스 이용,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)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서비스의 해지 및 은행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습니다.</p> <p>제 10 조 (면책)</p> <p>① <u>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 7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는 경우 등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은행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 <p>② <u>은행은 천재지변,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, 화재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	<p>제 3 조 이용대상거래 및 송금 한도 이 서비스의 이용대상 거래 및 각 거래별 송금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은행은 거래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 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거래별 송금한도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.</p> <p>① 서비스 이용대상 거래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해외체재자(유학생 포함) 송금</u> 2. <u>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</u> 3. <u>국내이체 송금 등</u> 4. <u>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송금</u> <p>② 송금한도 (자동화기기 이체 한도의 적용을 받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해외체재자(유학생 포함) 송금: 건당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20만불 상당액 이하</u> 2. <u>거주자의 증빙서류 미제출 송금: 1일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,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</u> 3. <u>국내이체 송금: 제한 없음</u> 4. <u>외국인근로자 국내보수송금: - 한도 미등록시 :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- 한도 등록시: 등록된 한도 내 (단 1일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, 1회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)</u> <p>제 6 조 (서비스 이용, 등록내용 변경 및 해지 신청)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은행에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.</p> <p>제 10 조 (책임)</p> <p>① <u>은행은 수취인의 이름 및 계좌번호 등 제 7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가 등록된 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송금한 대금이 대외은행으로부터 반환되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② <u>은행은 정전, 화재, 통신장애,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서비스가 지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. 다만,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.</u></p>	<p>송금 문구 변경</p> <p>송금한도 변경</p> <p>문구 수정</p> <p>면책조항 문구 변경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 약정서 적용 여부 : 적용